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 12. 11 조례 제17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용인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용인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용인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경영평가의 공개)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